

등록번호	교육지원과-1155
등록일자	2016. 1. 27.
결재일자	2016. 1. 2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	혁신교육팀장	교육지원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
전은자	황승주	김판덕	김종두	01/27 조인동	
협 조		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	임근래 김정현		

사회단체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위한
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
서 대 문 구
교육지원과

사회단체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위한

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계획

안전한 먹거리와 자연생태환경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회단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I 지원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32조의2 ~ 제32조의10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5조」

II 지원개요

- 2016년 친환경급식 관련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 : 총11,284천원
 - 민간경상사업보조 : 11,284천원
 - ※ 2015년도 지원 단체 및 보조금 :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11,284천원
- 사업추진기간 : 2016년 4월 ~ 11월
- 지원범위 :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
(단, 자부담 편성 원칙)
 -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액 결정
 - 사회단체 운영비 : 「지방재정법」 제 3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
□ 지원대상
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등록증 발급 단체
 -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
 - 단체 중앙조직이 비영리단체(법인)로 등록된 경우 산하 구협의회(위원회)를 비영리단체(법인)로 간주함
-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
- 안전한 먹거리 및 자연생태환경 관련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 외 대 상

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 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 -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·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
※ 국가나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사업 등 동일(또는 유사)사업에 대하여 중복 신청한 단체의 경우 또는 선정시점이 달라 이중 선정·지원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함

□ 공모사업

- 사업분야 : 사회기초질서확립 및 친환경 녹색도시

사업분야	세부사업
사회기초질서확립 및 친환경 녹색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한 먹거리 및 친환경 급식 사업 ○ 바른 식생활 및 텃밭등 체험 교육 ○ 자연생태환경 사업 ○ 식문화 의식 개선 운동

III

세부추진계획

□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 업무 흐름도



□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 공고

- 공고기간 : 2016. 1. 29 ~ 2016. 2. 17
 - 공고방법 : 구 홈페이지 게시
 - 공고내용 : 지원대상, 참여사업, 신청기간 및 장소, 신청서류 등
- 【붙임1】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(안)

□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16. 2. 3 ~ 2016. 2. 17
 - 접수장소 :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
 -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접수
 -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,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 -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단체자기소개서, 사업계획서, 사업추진실적 등
- 【붙임2】 2016년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류

□ 사업검토 및 의견서 제출

- 신청서류를 접수 후 단체의 적합성, 신청사업 및 신청금액,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·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2016년 2월 22일(월)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 제출
- 주요 검토사항
 - 법류 또는 조례 지원 근거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 여부
 - 단체의 적합성 및 신청사업 예산액의 타당성(사업비 지원 원칙)
 - 단체의 전문성·책임성 및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
 - 단체설립목적과 신청사업의 연계성 여부 등
 -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 한 단체의 평가

□ 사업 심의·선정 및 결과통보
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: 2016. 2월 말 ~ 3월 초 (정책기획담당관)
 - 검토의견을 토대로 단체 및 사업 심의
- 심의사항
 -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 - 지방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- 심의결과 통보 : 2016. 3월 말
 -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: 정책기획담당관 → 교육지원과 → 사회단체
 -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원결정된 사회단체에 통지

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

- 지원 확정된 사회단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
- 보조금 신청 및 교부기한 : 2016. 4월 18일
 - 「법」 제86조 제2항(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, 2016.2. 13. ~ 4. 13)의 제한기간 중에 공익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

- 단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교부
- 보조금 신청(교육지원과) → 예산배정 (정책기획담당관) → 보조금교부(교육지원과)

□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

- 단체의 세부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예산 집행 관리
- 사업 및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후 집행 원칙 준수

□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사업보고서 제출

- 제출부서 : 사회단체 → 교육지원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
- 제출기한 :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
- 제출서류 : 보조금정산서, 보조금집행세부내역서, 사업추진실적보고서, 지출결의서, 통장거래내역 사본, 영수증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

□ 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

- 제출 : 교육지원과 → 정책기획담당관
-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정책기획담당관에 제출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실시

IV

행정사항

□ 사업 심의 및 사회단체 선정, 결과 통보 : 정책기획담당관

- 단체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, 검토의견서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제출

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: 정책기획담당관

- 붙임 : 1. 201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(안)
2. 201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류. 끝